

(사)한국건축역사학회 학생기자단 운영 규정

제정일 26.05.16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(사)한국건축역사학회(이하 “학회”)의 학생기자단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, 건축역사 분야의 학술적 소통을 활성화하고 차세대 연구자 및 실무자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 및 성격)

- ① 학생기자단은 학회의 주요 활동 및 건축역사 관련 담론을 기록·해석·확산하는 학술 기반의 활동 조직으로 한다.
- ② 학생기자단은 단순한 홍보 조직이 아니라, 건축역사에 대한 비평적 시선과 기록을 수행하는 준학술적 플랫폼으로서 기능한다.

제3조 (구성)

- ① 학생기자단은 대학(원)생으로 구성하되, 이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.
- ② 기자단의 정원은 필요에 따라 학회가 정한다.
- ③ 학생기자단 운영을 위하여 지도교수 또는 담당 이사를 둘 수 있다.
- ④ 필요시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 (활동기간)

- ① 학생기자단의 활동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.
- ②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, 연임 여부는 활동평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.

제5조 (활동 내용)

학생기자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.

- ① 학회 논문집 기획기사 작성 및 게재
- ② 학회 논문집 소식기사 작성 및 게재
- ③ 학술대회 시 학생 포럼 기획 및 운영
- ④ 학회 주요 행사 취재 및 홍보, 온·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아카이빙
- ⑤ 기타 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제6조 (운영)

- ① 학생기자단은 필요시 정기회의를 개최한다.
- ② 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팀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.
- ③ 기사 작성 및 콘텐츠 생산은 학회의 편집 기준에 따른다.
- ④ 활동 결과물은 학회 논문집 및 공식 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.

제7조 (선발)

- ① 학생기자단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지원자는 소정의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선발은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이루어진다.

제8조 (활동 평가)

- ① 학생기자단의 활동은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. : 기사 및 콘텐츠 생산 실적, 학회 활동 참여도, 학술적 기여도 및 성실성
- ② 평가 결과는 연임 여부 및 수료 인정의 기준으로 활용한다.

제9조 (활동 혜택)

학생기자단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

- ① 학회 논문집 기획기사 및 소식기사 게재 기회를 제공한다.
- ② 학회 회원 가입 시 입회비 및 연회비 면제 및 학생기자단 명함을 제공한다.
- ③ 활동 수료증 및 활동 증명서를 발급한다.
- ④ 취재 활동에 필요한 실비(교통비 등)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 (재원)

- ① 학생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회 예산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.
- ② 활동 지원비의 지급 기준은 학회가 별도로 정한다.

제11조 (징계 및 자격 상실)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기자단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. :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,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, 기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
- ② 자격 상실 여부는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부칙

- ① 본 규정은 202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